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01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종 전

□ <신 설>

달라지는 내용

-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허용
 - [대상물품] 국산품
 - * 타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 및 환급대상 내국물품 제외
 - [판매한도] 없음
 - [판매대상] 해외 거주 외국인
 -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 [배송지] 외국

기대효과 면세점의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국산품(K-Brand) 수출 증대

시행일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6월부터 사업 시행**
*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 제정



02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종 전

□ <신 설>

달라지는 내용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 [등록의무 대상요건]

- 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에 따라 등록된 자
- 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다만,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

기대효과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

시행일 '21. 7. 1. [등록유예: ~ 2022. 6. 30.]
* 「관세법」 개정



03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

종 전

- 할당관세 대상품목
· <신 설>
- 할당관세율
○ 나프타 제조용 원유 (0.5%)
- 조정관세 대상 품목
○ 나프타 (0.5%)
- 할당관세 적용기간
○ 계란 가공품, 요소('22년 6월 30일)
- 할당관세 한계수량
○ 사료용 근채류(70만톤)

달라지는 내용

-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페로크로뮴, 망간,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 나프타 제조용 원유 (0.5→0%)
- 조정관세 대상품목 종료
○ <삭 제> [기본세율 0% 적용]
-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 계란 가공품, 요소('22년 12월 31일)
-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
○ 사료용 근채류(100만톤)

기대효과 할당관세(0% 등 저세율) 적용품목 신규 지정 및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

시행일 '22. 6. 22.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제기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04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종 전

□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 HS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 껍질과 웨이스트(waste)
HS 제1801호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HS 제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달라지는 내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세

기대효과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시행일 '22. 6. 28.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TAX FREE



05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

종 전

-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 → 과세하고 있음

달라지는 내용

- 면제범위 확대
 -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면세

기대효과 단순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포장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

시행일 '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06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적용기간 연장

종 전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
→ 3.5%로 인하하여 적용
-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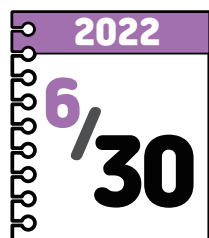
달라지는 내용

- 탄력세율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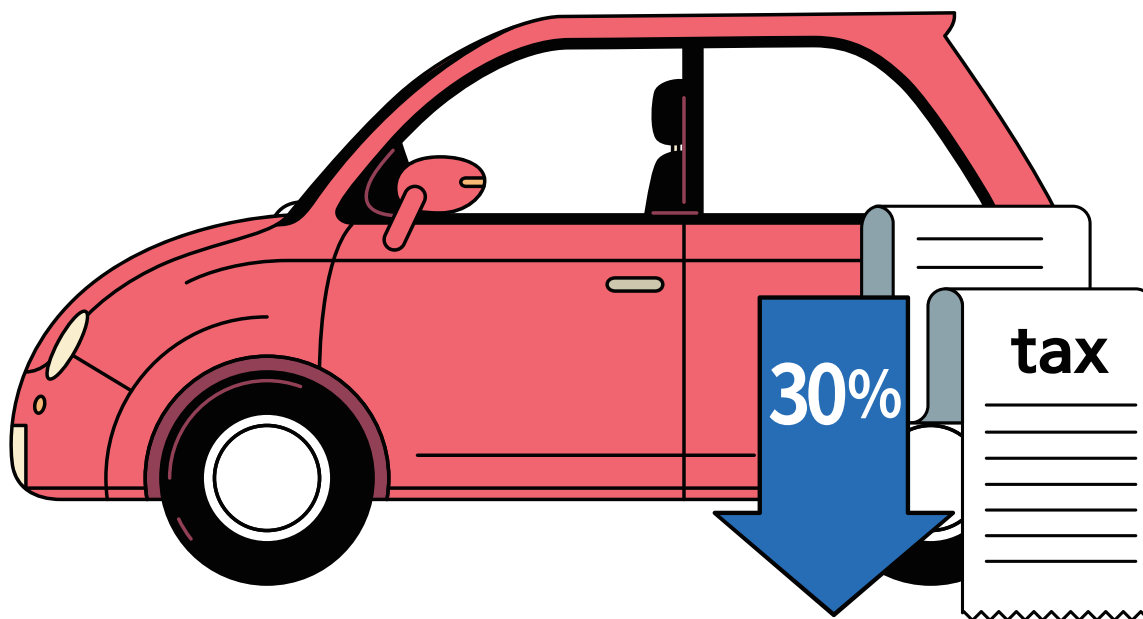
기대효과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시행일 '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제31383호) 개정



연장



07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종 전

□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킬로그램당

275원 → 193원

※ 적용기간: 2022년 7월 31일까지

달라지는 내용

□ 탄력세율 추가 인하

· 킬로그램당

리터당 275원 → 176.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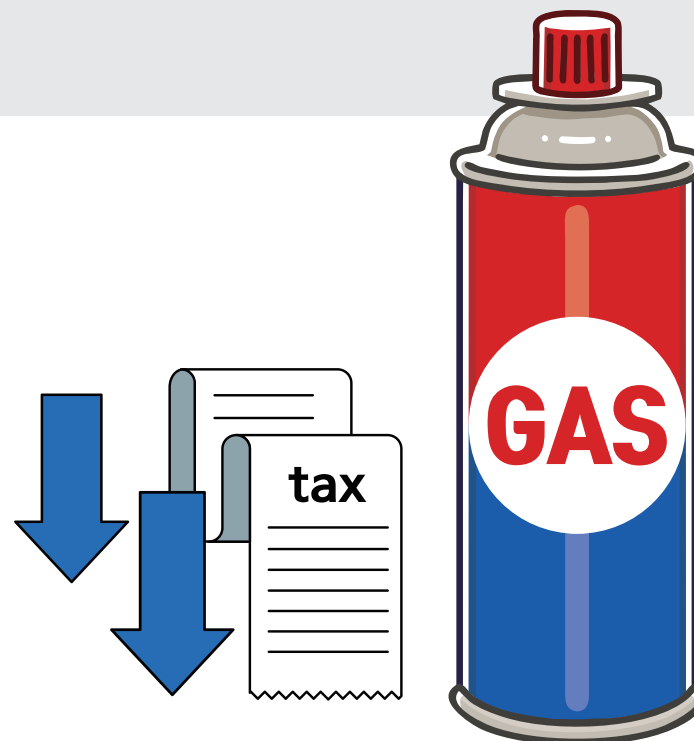
※ 적용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기대효과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

시행일 '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08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

종 전

□ 탄력세율 적용

·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 370원

· [경유 등]

리터당 375원 → 263원

※ 적용기간: 2022년 7월 31일까지

달라지는 내용

□ 탄력세율 추가 인하

·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 332.5원

· [경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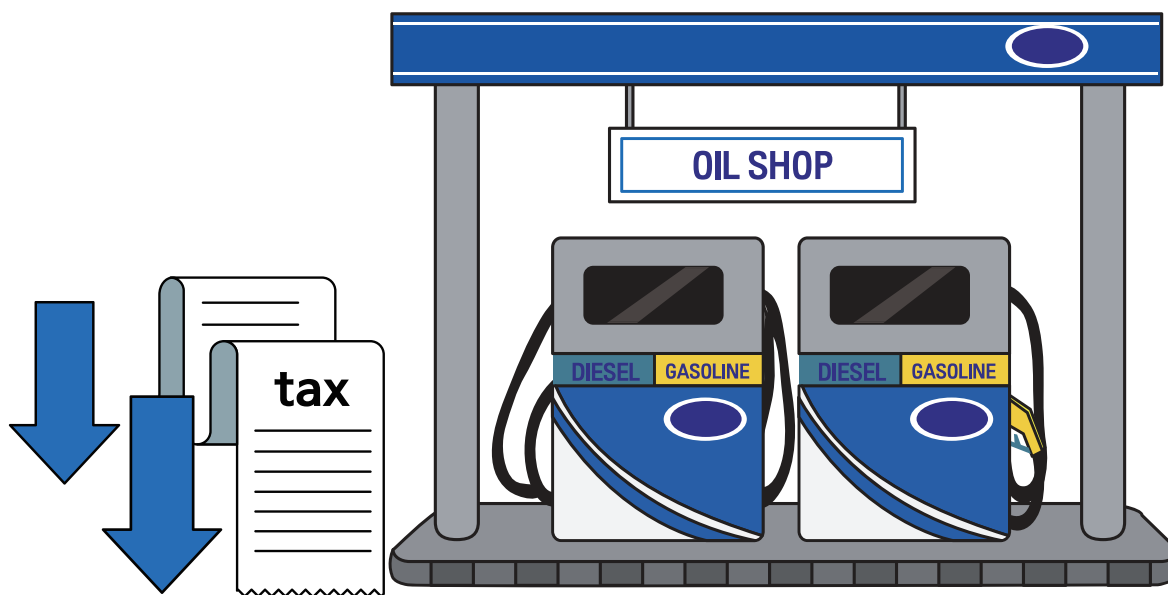
리터당 375원 → 238원

※ 적용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기대효과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

시행일 '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09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

종 전

□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운영

- 간이확인 적용 협정
- 아세안, 베트남, 중국 및 인도
- < 추 가 >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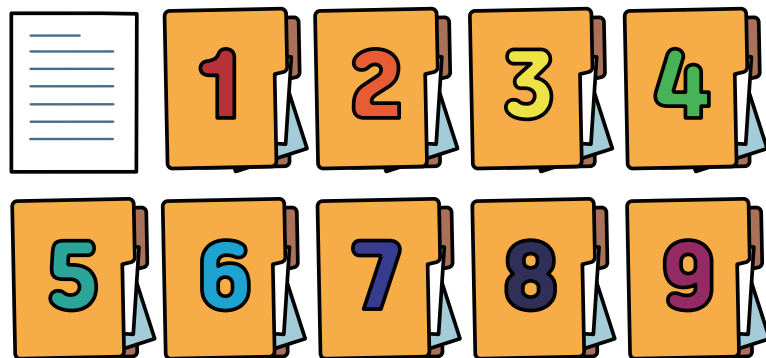
- *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관세청장 고시로 지정)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
- 간이확인 적용 협정 확대
- < 좌 동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 255개 품목

기대효과 RCEP 활용 수출·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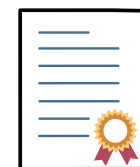
* (제출서류)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9종 → 국내제조확인서

시행일 '22. 5. 10.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9종



국내제조확인서

10 국민안전 밀접 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 지정 연장

종 전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5개*) 지정 종료
- 2022.7.31 종료
-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자동차 휠, 연석

달라지는 내용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3개*) 지정 연장
- 2022.8.1~2024.7.31 연장
-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기대효과 국내 유통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국민안전 밀접 품목은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재지정하여 사회 안전과 국내 소비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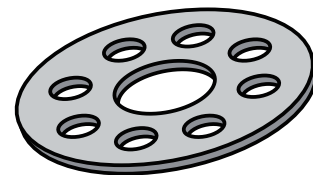
시행일 '22. 8.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플랜지

2022.7.31

유통이력관리 대상 지정 종료

3개 물품 지정 연장

2024.7.31

유통이력관리 대상 지정 연장